

# 기관추천 특별공급 (e편한세상 흥성 더센트럴) 신청 관련 안내문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신청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총족 및 청약통장가입 기간 6개월 이상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제외)
-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 부적격 당첨자는 해당기관의 추천여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인터넷 청약접수 및 동·호수 배정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청약 미접수시 당첨자선정 및 계약 불가)
-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특별공급 대상자(예비추천 포함)에게 특별공급 청약접수 관련하여 별도의 안내를 하지 않으며, 선정된 특별공급 대상자가 청약 접수안내를 받지 못하여 청약 미접수로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신청자가 안내문의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안내, 재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당 사업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e편한세상 흥성 더센트럴 홈페이지(<https://www.dlcon-apt.co.kr/danji/221092/index.html#/>)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따라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구, 수도권 외 기타지역인 흥성군에 공급하는 당 주택은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12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 본 안내문은 분양승인 전 제작 발송된 것으로 모집공고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청약 전에 모집공고를 참고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I

### 공급개요 및 일정

- 주택명 : e편한세상 흥성 더센트럴
- 공급위치 : 충청남도 홍성군 흥성읍 월산리 906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19층~20층 6개동 총 47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시행(수탁) : (주)한국토지신탁      ■ 시행(위탁) : (주)드림도시개발      ■ 시공 : DL건설 주식회사
- 특별공급 규모 및 내역 : 총 470세대, 특별공급 262세대 중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40세대
- 입주 예정일 : 2025년 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 대상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m <sup>2</sup>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 면적	주택형별 총 공급세대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084.9925A	84A	84.9925	23.7084	108.7009	59.6864	168.3873	154	16
084.9808B	84B	84.9808	25.0147	109.9955	59.6782	169.6737	119	12
084.9974C	84C	84.9974	23.1720	108.1694	59.6898	167.8592	117	12
101.9639	101	101.9639	27.2655	129.2294	71.6047	200.8341	80	-
합계							470	40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괄호안의 수는 예비자 수)

구 분		84A	84B	84C	101	합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8(10)	4(5)	4(5)	-	16(20)
	국가유공자 등	2(3)	2(3)	2(3)	-	6(9)
	장기복무 제대군인	2(3)	2(3)	2(3)	-	6(9)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2(3)	2(3)	2(3)	-	6(9)
	중소기업 근로자	2(3)	2(3)	2(3)	-	6(9)
합 계		16(22)	12(17)	12(17)	-	40(56)

\* 상기 내용은 인허가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처리 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벽체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 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전기/기계실, 주차장,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을 의미합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네자리 이하 단수조정으로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 전체 합산 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며,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입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합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 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 수치는 예비입주자 배정 세대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따라 120%를 적용하였습니다.

■ 특별공급 일정계획(예정)

구분	일정	비고
입주자 모집공고	2022년 10월 14일(금) 예정	e편한세상 홍성 더센트럴 홈페이지 (https://www.dlcon-apt.co.kr/danji/221092/index.html#/) )
견본주택 개관	2022년 10월 21일(금) 예정	e편한세상 홍성 더센트럴 견본주택 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특별공급 청약일	2022년 10월 24일(월) 예정 09:00~17:30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당첨자 발표	2022년 11월 01일(화) 예정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공용/네이버) 인증서 로그인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2022년 11월 02일(수) ~ 2022년 11월 09일(수)	e편한세상 홍성 더센트럴 견본주택 방문 제출
계약 체결	2022년 11월 15일(화) ~ 11월 17일 (목) 10:00~16:00	e편한세상 홍성 더센트럴 견본주택

\* 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10:00~14:00)가 가능합니다. 단, 견본주택 접수 시에는 특별공급 신청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접수가 가능합니다.(필요서류 견본주택 별도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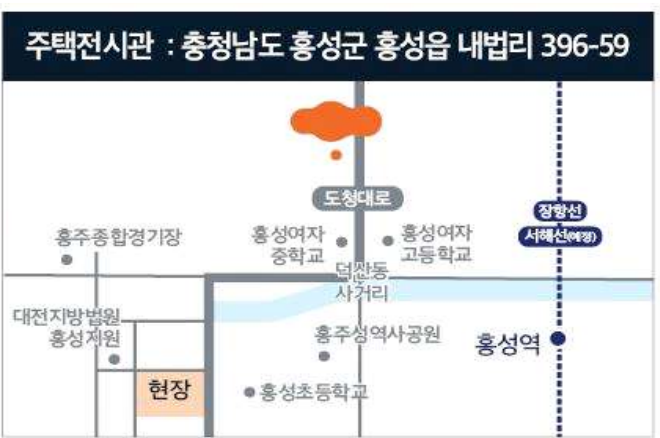
\* 상기 일정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 사항으로 향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1회한정 / 자격요건 /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li> </ul>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li> <li>※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으로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li> <li>[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로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li> <li>-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li> <li>-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무주택세대주 요건</li> <li>※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주택공급신청자</li> <li>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li> <li>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ul> </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9호 소형·저가주택은 민영주택 일반공급에 해당하는 요건으로 특별공급 신청시 주택 소유로 인정됩니다.</li> </ul>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부일에 납부한 월 납부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li> <li>※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청약예금의 예치금액]</b></p> <table border="1" data-bbox="220 1442 1524 1659"> <thead> <tr> <th>구분</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홍성군 및 충청남도, 세종시)</th> <th>그 밖의 광역시 (대전광역시)</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200만원</td> <td>25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300만원</td> <td>400만원</td> <td>6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400만원</td> <td>700만원</td> <td>1,0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500만원</td> <td>1,000만원</td> <td>1,500만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각 호에 해당 하는 자 중 각 해당기관의 특별공급별 추천을 받으신 무주택세대구성원(단,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li> <li>• 추천 기관</li> </ul> <table border="1" data-bbox="209 1771 1538 2056"> <thead> <tr> <th>구분</th> <th>관련법규</th> <th>해당기관</th> </tr> </thead> <tbody> <tr> <td>국가유공자 등</td> <td>「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2호~6호 국가유공자 등</td> <td rowspan="2">국가보훈처 충남서부보훈지청</td> </tr> <tr> <td>장기복무 제대군인</td> <td>「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8호 1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td> </tr> <tr> <td>10년이상 복무군인</td> <td>「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라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td> <td>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td> </tr> <tr> <td>장애인</td> <td>「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td> <td>충청남도청 장애인복지과</td> </tr> <tr> <td>중소기업 근로자</td> <td>2021.01.20. 개정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관련 지침 해당자(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80호, 시행 2021.1.20)</td> <td>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td> </tr> </tbody> </table>	구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홍성군 및 충청남도, 세종시)	그 밖의 광역시 (대전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구분	관련법규	해당기관	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2호~6호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처 충남서부보훈지청	장기복무 제대군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8호 1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복무군인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라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충청남도청 장애인복지과	중소기업 근로자	2021.01.20. 개정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관련 지침 해당자(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80호, 시행 2021.1.20)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구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홍성군 및 충청남도, 세종시)	그 밖의 광역시 (대전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구분	관련법규	해당기관																																				
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2호~6호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처 충남서부보훈지청																																				
장기복무 제대군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8호 1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복무군인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라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충청남도청 장애인복지과																																				
중소기업 근로자	2021.01.20. 개정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관련 지침 해당자(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80호, 시행 2021.1.20)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p><b>당첨자 선정 방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li> <li>•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li> <li>•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li> </ul>
<p><b>유의 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한 주택형의 동호수 배정은 특별공급, 일반공급 구분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부동산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합니다. (미신청·미계약 동 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합니다.)</li> <li>•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 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 해당 주택형별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동일 주택형 내에서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공급하고 이후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신청자 모두를 무작위 추첨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li> <li>•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 및 동·호수 배정은 일반공급 발표일에 동시 발표 합니다.</li> <li>• 특별공급 대상자(예비입주자 포함)는 관련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접수일에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 하여야 합니다.(서류제출 없음)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견본주택(10:00~14:00)에서 신청 가능합니다.(자격증명 및 구비서류 제출)</li> <li>• 동일주택에 한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청약은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 시 특별공급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신청한 경우 타 특별공급(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관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간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 가능합니다)</li> <li>• 특별공급, 일반공급 동시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공급을 우선 배정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배정 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지위는 무효</li> <li>-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포기하고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택 불가합니다.</li> <li>- 다만, 특별공급 예비입주자가 모두 소진되어 예비 추첨 기회가 상실된 경우 일반 예비순번 지위 인정됩니다.</li> </ul> </li> <li>• 공급금액,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향후 공고 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며,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신청형별 세부사항 등은 당사 견본주택 및 인쇄제작물, e편한세상 홍성더센터럴 홈페이지(<a href="https://www.dlcon-apt.co.kr/danji/221092/index.html#/">https://www.dlcon-apt.co.kr/danji/221092/index.html#/</a>)에서 다시 한번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ul>

**III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대표 번호 : 1566-3220
- 홈페이지 : <https://www.dlcon-apt.co.kr/danji/221092/index.html#/>
- 견본주택 위치



[붙임 2.]

주택형	구분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비고
084.9925A	추천자	1				
		2				
		...				
	예비추천자					
084.9808B	추천자	1				
		2				
		...				
	예비추천자					
084.9974C	추천자	1				
		2				
		...				
	예비추천자					

※ 본 양식은 추천자의 수에 따라 편집이 가능하나, 각 항목은 필수 항목이므로 삭제 시 접수 불가.

※ 예비추천자는 순위 미표기하여 통지해주시기 바랍니다.